

##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

'사회적기업육성법'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사업장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 (주소)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처분내용	처분일자
		근거규정	처분사유		
(재)뉴라이프재단 (제2017-147호)	이의현 (인천 서구 심곡로 86 A동 2층)	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 2호	인증 요건 미충족 (사실상 폐업, 도산 등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)	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(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 증제한)	2026.6.18.

2026. 6. 18.

**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**